

직제규정

2016년 08월 19일 제정 2016년 11월 22일 개정 2017년 08월 24일 개정 2020년 04월 01일 개정 2020년 08월 19일 개정
2022년 06월 09일 개정 2022년 11월 01일 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신대학원 대학교(이하 “본 교” 이라 한다)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본 교의 직제는 교육관계 법령, 학교법인 복음신학원 정관 및 본 교 학칙이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편 제

제3조(기구) 본 교에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고, 기구표는 별표1과 같다.

1. 기본기관은 총장, 대학원위원회, 대학평의위원회
2. 학칙 제4조에 규정한 각 과와 학칙 제4조의 별표1 구분에서 정한 박사원·신학대학원·일반대학원의 주임교수 <개정 2020.08.19.>
3. 행정기관은 총무처, 기획처, 교학처
4. 부설기관은 도서관, 평생교육원, 학보사, 출판부, 건신상담심리센터, 대안교육센터 우리동네, 교회지도자양성교육원, 건신인권센터
<개정 2016.11.22., 2017.08.24., 2022.06.09., 2022.11.01.>
5. 부설연구소는 오순절신학연구소, 목회연구원, 건신상담연구소, 대안교육연구소, 건신예술치료연구소, 건신미용연구소, 건신사회복지연구소
<개정 2016.11.22., 2017.08.24.>
6. 각종 위원회 <개정 2016.11.22.>
7. 산학협력단 <신설 2022.06.09.>

제4조(총장 등의 지위) ① 총장은 본 교를 대표하며, 교무를 통할한다.

②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총장을 둘 수 있다.

③ 총장의 유고가 있을 시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대학원위원회 등 구성) 대학원위원회 및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위원회 설치) ① 학사행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자문기관 또는 처별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.

제7조(행정기관) ① <삭제> <개정 2017.08.24.>

② 처장은 교수, 부교수 또는 4~5급 직원으로 보한다.

③ 총무처에 총무과를 두고 과장은 5~6급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08.24.>

④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며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~6급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08.24.>

⑤ 교학처에 교학과를 두고 과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5~6급 직원으로 보한다. <개정 2017.08.24., 2020.04.01.>

제8조(산학협력단)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신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별도 법인으로 둘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단에 단장을 두고, 하부조직으로 대안교육센터 우리동네를 둔다.

<개정 2016.11.22.>

③ <삭제> <개정 2016.11.22.>

제9조(업무분장) ①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.

② 부서별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0조(보직임면) ① 제3조 제2호의 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제3조 제3호와 제4호의 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으로서 총장이 임면한다.

③ 제3조 제4호의 부설기관과 연구소에는 업무의 형편에 따라 팀장과 전담직원을 둘 수 있으며, 팀장은 교원 또는 일반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.

제11조(부서 신설 및 폐지) 총장은 필요에 의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의 대학원위원회 등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부서를 신설 또는 폐지할 수 있다.

제12조(임기) 교원인 보직자의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2년으로 할 수 있으며, 연임할 수 있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대학원위원회 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- ③ (경과조치) 제12조 규정의 개정 이전에 임기 없이 임명된 교원은 이 규정에 적용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별지> [별표1] 건신대학원대학교 기구표 <개정 2020.08.19., 2022.06.09., 2022.11.01.>

